

# 고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5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5. / 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## 1. 개정이유

- 군민상의 부문별 시상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시상부문별 복수 추천의 경우 심의 의결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군민상의 시상 부문을 명확히 함(안 제3조 제1항)
- 공적이 현저하여 특별히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문별 2인으로 할 수 있음(안 제3조 제2항)
- 수상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수상 후보자별 투표에 의거 3분의 2이상 득표자 중에서 다득표순, 같은 득표일 때는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함(안 제10조)

## 3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및 근거
  -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,
  -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
- 입법예고
  - 고성군 공고 제2009-303호(2009. 4 . 2 ~ 2009. 4 .21)
  - 의견제출사항 : 없음
-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없음
-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## 4. 본 문 : 덧붙임

## 고성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민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 중 “농수산진흥부문”을 “농림수산진흥부문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3호 “문예체육부문”을 “문화체육부문”으로 하며,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공적이 현저하여 특별히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문별 2인으로 할 수 있다.

제4조 중 “본적지”를 “등록기준지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관내기관장·단체장·읍면장이 한다”를 “관계기관장·단체장 또는 읍면장이 한다”로 하고, “군민”을 “군민 또는 재외군민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군 게시판”을 “군 홈페이지”로 한다.

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수상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수상 후보자별 투표에 의거 3분의2 이상 득표자 중에서 다 득표순, 같은 득표일 때는 연장자를 우선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서무담당”을 “후생복지담당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제3조(시상부문) ①군민상의 시상 부문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역사회 개발 부문</li> <li>2. <u>농수산진흥부문</u></li> <li>3. <u>문화체육부문</u></li> <li>4. 애향부문</li> </ol> <p>②군민상은 부문별로 1인으로 한다.</p>	<p>제3조(시상부문)①.....</p> <p>....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<u>농림수산진흥부문</u></li> <li>3. <u>문화체육부문</u></li> <li>4.(현행과 같음)</li> </ol> <p>②.....</p> <p><u>다만, 공적이 현저하여 특별히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문별 2인으로 할 수 있다.</u></p>			
<p>제4조(수상자 자격) 군민상 수상후 보는 <u>본적지</u>를 고성군에 두고 있거나 5년이상 고성군에 거주한 자로 한다</p>	<p>제4조(수상자자격).....</p> <p>.....<u>등록기준지</u>.....</p> <p>.....</p>			
<p>제6조(후보자추천) ①후보자의 추천은 <u>관내기관장·단체장·읍면장이 한다</u>. 다만, <u>군민 20인 이상</u>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.</p> <p>②군민상심의위원회에서도 추천된 명단을 검토하여 추가로 3분의 2이상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후보자추천)①.....</p> <p>.....<u>관계기관장·단체장 또는 읍면장이 한다.</u> .....<u>군민 또는 제외군민</u>....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			
<p>제7조(수상자결정) ①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상예정일 10일이전에 군민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. 다만, 수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적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될 시는 시상하지 않는다.</p> <p>②군민상 수상자로 결정된 자는 <u>군 게시판</u>에 공고 후 개별 통지한다.</p>	<p>제7조(수상자결정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.....</p> <p><u>군홈페이지에</u> .....</p>			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회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10조(회의)..... ..... ..... 다만, 수상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수상 후보자별 투표에 의거 3분의 2이상 득표자 중에서 다득표순, 같은 득표일 때는 연장자를 우선한다.</p>
<p>제11조(간사 및 서기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키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. ②간사는 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서무담당(6급)이 된다.</p>	<p>제11조(간사 및 서기) ①(현행과 같음) ②..... 후생복지담당(6급)이 된다.</p>